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

의안 번호	2282
----------	------

발의년월일 : 2012. 06. 13.

발 의 자 : 윤태천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성실납세자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토록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 입법예고 : 2012. 6. .() ~ 6.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시세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우수납세자”란 최근 3년동안 시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시세 성실납세자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우수납

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사실이 있는 법인·개인·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된 자
2.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시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는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납세자

제6조(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안산시 시세 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현판·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판·인증서 등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6.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는 공연의 입장권을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발된 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선발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82
----------	------

제안년월일 : 2012. 6. 26.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도세의 과세권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 선정기준에서 시세로 제한하기 보다는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로 확대하였고,
-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이용시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고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토록 규정하여 매년 몇 백명에게 표창을 수여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이용규정을 완화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지원"에서 "우대"로 수정함.
-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의 용어 정의를 "시세"에서 "지방세"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부상품을 "현판·인증서"에서 "인증서"로 수정함.(안 제7조제1호, 제7조제2호)
-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조항을 "모범납세자의 표창을 받고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에서 "안산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부칙)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원”을 “우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마다 시세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를 “지방세(다만, 등록면허세 제외)를 연간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세”를 “매년 지방세”로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를 “납부한 자로서”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시세 성실납세자”에서 “성실납세자 ”로 하고, 제4조제2호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서 “우수납세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 관내에”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조제3호에”로 한다.

제6조 조명을 “선정 등”에서 “대상자 선정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산시 시세 조례」”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원”을 “우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현판·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현판·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모형·규격에”를 “규격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2년간 세

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제5호 중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이”를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로 하며, 제8조 제1항제6호 중 “공연의 입장권”을 “공연 관람료”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호(주 차요금의 감면)의 “마” 항목의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 시장이”를 “안산시장이”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u>지원</u> 조례안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u>우대</u>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u>지원</u> 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우대</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u>해마다</u> 시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1. ----- ----- ----- <u>지방세(다만, 등록면허세 제외)</u> 를 연간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우수납세자”란 최근 3년동안 <u>시세</u>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 <u>매년 지방세</u> ----- ----- <u>납부한 자로서</u> -----.
3. (생략)	3. (원안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
1. 시세 성실납세자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3. (생략)	3.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p>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우수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사실이 있는 법인·개인·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생략)</p>	<p>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 ----- -----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p> <p>② ----- 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 ----- -----.</p> <p>③ (원안과 같음)</p>
<p>제6조(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안산시 시세 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6조(대상자 선정 등) ① ----- -----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 <u>우대</u> -----.</p>
<p>제7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u>현판·인증서</u> 등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현판·인증서</u> 등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인증 등) ① ----- ----- <u>인증서</u> -----.</p> <p>② ----- <u>인증서</u> 등의 규격에 -----.</p>
<p>제8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8조(지원) ① ----- ----- -----.</p> <p>1. ~ 2.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답보를 면제할 수 있다.	3.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답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4. (생략)	4. (원안과 같음)
5.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5.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 ----- ----- ----- -----.
6.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는 <u>공연의 입장권을</u>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 <u>공연 관람료를</u>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생략) <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u>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호(주차요금의 감면)의 “마” 항목의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를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로 한다.</u></p>